

소리 없는 자를 위한 소리

Voice for Voiceless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태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나 스물여섯 살 때 회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가 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핵공학을 전공하였으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진로가 바뀌었다.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미국 서남침례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목산교회를 개척하여 2대 담임목사로 목회하다가 주님의 지시를 따라 조기 퇴임하였다. 목산교회가 낙태반대운동연합 창립에 참여한 교회이어서 초기부터 임원 활동을 하다가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다.

(사)낙태반대운동연합은 1994년 4월 28일 결성된 프로라이프(pro-life)단체이다. 당시 생명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낙태에 관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동의한 23개 단체가 연맹을 맺어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의식을 자리 잡게 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고, 2011년부터는 사단법인이 되었다. 23개 단체 중 20개 단체가 기독교 관련 단체이지만 종교색을 배제한 시민사회단체로 성격을 정하였다. 실제로 지난 24년 동안 기독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왜 우리 사회에 낙태가 만연하고 낙태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낙태가 실제로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고 못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알려 주고 보여 주자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낙태반대운동연합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예방사업이다. 유아로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성교육과 생명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서 강의하고 매년 봄과 가을 여덟 번의 생명사랑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생명학교 초급, 중급, 강사 과정을 개설하여 프로라이프 활동가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 그 다음의 중점 사업은 위기임신상담이다. 출산을 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낙태를 강요받아 보호가 필요한 임신 여



제롬 르즈느 박사(Jerome Lejeune, 1926~1994)

"수정이 되면 새로운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잉태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지속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 사실은 명백한 임상적 증거로 확인된 것이다."

성과 배우자의 낙태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는 남성의 상담 전화는 거의 매일 접수되고 있다. 상담은 대부분 좋은 결말을 맺는다. 아기를 출산하여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일이 세 번째 중점 사업이다. 그리고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해왔다.

생명을 지지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Pro-Life의 핵심 개념은 모든 인간생명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점이 '모든'에 있다. 어떤 성장단계의 인간도 차

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부터 생명운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낙태의 윤리성은 결정된다. 과연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인가? 낙태는 철학이나 법의 문제가 아니다. 낙태는 여론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낙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밖의 주제이다. 낙태는 종교 이전의 문제이다. 낙태는 생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증거를 확인하는 생명과학의 결론에 따라 결정되는 인륜(人倫)의 문제이다.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르즈느 박사의 발언에 귀 기울이면 된다.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전의 문제

생명과학 전문가인 의사는 낙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낙태 수술을 하고, 소수이지만 일부 의사는 낙태를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낼까? 미국은 주마다 낙태 규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는 낙태를 덜 하고, 낙태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 다른 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산부인과 의사의 80% 이상이 낙태시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도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지만 90%의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시술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여건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낙태시술을 하지 않아도 의사로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빌딩에서 개원하지 않는 한 낙태 시술의 유혹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의원 운영을 한다면, 다른 과의 전문의에 비교해서 수입이 적은 것은 물론, 때로는 의원 운영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진리와 견해는 다르다. 오늘 날씨가 좋은 편인가, 안 좋은 편인가는 개인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느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느냐는 개인의 견해들을 모아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이다. 마찬가지로 태아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이다. 다수결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견해가 아니다. 중세 종교재판에서 천동설 지

지자들이 지동설 주장자들을 유죄로 판결했듯이, 현대에도 과학적 팩트를 무시하고 여론과 정치력으로 낙태를 자유화 한 일들이 벌어졌고 오늘 한국에서도 그 시도가 진행 중이다. 1982년 제5공화국 군사정권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기적 같은 일이다. 1992~94년 모자보건법 14조의 낙태 허용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에 그것보다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을 형법에 넣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가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에 있었다. 그러나 천주교와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적극적인 반대 청원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한 번 기적적으로 법안이 계류되어 폐기되었다. 2008~2010년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었다. 2010년에는 비슷한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둘 다 입법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2010~2012년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이 있었으나 재판관 8명의 4대4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5년 후인 2017년 또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재심리 중이고 5월 24일 공개변론 후 재판관 9명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기준이 바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소위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급진 여성주의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만들려는 시도가 성공할지도 모르는